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 – 318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Ⅰ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 채용예정인원 : 200명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인원			비 고
			계	남	여	
계			200	185	15	
공개경쟁	소 방	지방소방사	105	101	4	필기 + 체력 + 면접
경력경쟁	원 전 대 응	지방소방장	1	1		필기 + 면접 ※ 체력시험 미실시
	지 진 대 응	지방소방장	1	1		
	도 시 방 재	지방소방장	1	1		
	항 공 정 비	지방소방장	1	1		실기 + 체력 + 면접
	운 항 관 리	지방소방교	1	1		필기 + 체력 + 면접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교	1	1		
		지방소방사	2		2	
	구 조	지방소방사	25	25		
	구 급	지방소방사	50	43	7	
	소방관련학과	지방소방사	10	8	2	
	중 국 어	지방소방사	2	2		

※ **원전대응**, **지진대응**, **도시방재**, **중국어** 분야는 **남·여 구분 없음**.

□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17. 3. 6.(월) ~ 10.(금) 09:00 ~ 21:00 ※ 취소 : 3. 6.(월) ~ 15.(수) 21:00까지		
필기시험	3. 29.(수)	4. 8.(토)	4. 27.(목)
체력시험	4. 27.(목)	5. 9.(화) ~ 11.(목)	5. 19.(금)
서류전형		5. 16.(화) ~ 18.(목)	6. 23.(금)
신체·적성검사	5. 19.(금)	5. 23.(화) ~ 25.(목)	6. 5.(월)
면접시험	6. 5.(월)	6. 13.(화) ~ 16.(금)	6. 23.(금)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및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Ⅱ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지방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장 **(항공정비분야)**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4.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 ①,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공개경쟁	소 방	① 2017.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② 2017.01.0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자
경력경쟁	소방관련학과 구급상황관리	
	구 조 구 급	① 2017.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② 2017.01.01. 이전까지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그 외	거주지 제한 없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분야

분 야 (계 급)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원전대응 (지방소방장)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원자력 및 에너지공학과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유사학과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붙임 6】** 참조
지진대응 (지방소방장)	지질학과, 지구과학과, 지구시스템과학과, 지구정보공학과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유사학과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 **【붙임 6】** 참조
도시방재 (지방소방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도시방재(방재안전)**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계급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3 ▶ **【붙임 7】** 참조
항공정비 (지방소방장)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항공정비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운항관리 (지방소방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항관리(관제)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계급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3 ▶ **【붙임 7】** 참조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상황관리 (지방소방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able>
<tr><th>분 야
(계 급)</th><th>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th></tr>
<tr><td>구 조
(지방소방사)</td><td>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u>3년 이상</u>인 자로서 <u>하사</u> 이상의 계급으로 <u>1년 이상</u>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table><tr><td>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td>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td></tr><tr><td>② 특수임무대
(국 방 부)</td><td>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수방사35특공대대</td></tr><tr><td>③ 기타 특수전부대</td><td>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td></tr></table></td></tr>
<tr><td>구 급
(지방소방사)</td><td><u>간호사</u> 또는 <u>응급구조사 1급</u>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u>2년 이상</u>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td></tr>
</table>

분 야 (계 급)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소방관련학과 (지방소방사)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중 국 어 (지방소방사)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음의 자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新HSK 6급 이상** • **SNULT(듣기, 읽기) 총점 81점 이상** • **FLEX(듣기, 읽기) 총점 901점 이상**

※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됨.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분(10:00~11:40), 경력경쟁 60분(10:00~11:00)

○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4지선택형)

구 분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소 방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선택과목 출제범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세부내용 **【붙임 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붙임 2】**참조

구 분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경력경쟁	**소방관련학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1]
	그 외	국어, **영어** [2],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영 어 [2]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경력경쟁채용 중 항공정비 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며 국민안전처에서 실기시험 지원 예정 (세부사항 **별도 공고** 예정)

- 실기시험 방법 : 기술분야 및 기본역량에 대한 구술 평가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중국어, 원전대응, 지진대응, 도시방재, 운항관리, 항공정비의 경우 3배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3】 및 【붙임 3-1】 참조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 원전대응, 지진대응, 도시방재 분야 체력시험 미실시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실시 ▶

1. 관련근거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20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붙임 3-2】 참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목　　적 :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응시생 건강보호
3. 금지약물 : 총 24종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4. 실시절차 : 체력시험 응시자 중 10% 이내 무작위 선정하여 소변 채취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분석 의뢰

□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응시자격요건, 경력 및 가산특전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별도 방문 제출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신체검사 일정은 지정 종합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붙임 4】** 참조

○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1단계(집단면접)과 2단계(개별면접)으로 구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단계 집단면접 (30점)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30점)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경력경쟁채용 중 항공정비 및 운항관리 분야는 국민안전처에서 면접시험 지원 (세부사항 **별도 공고**)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항공정비분야는 **실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체력시험 미실시 분야(원전대응, 지진대응, 도시방재)**는 **필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10%**의 합 **85%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모두 합격자로 처리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Ⅳ 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로 직접 접속하여 접수하고,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17. 3. 6.(월) ~ 3. 10.(금)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7. 3. 6.(월) ~ 3. 15.(수) 09:00 ~ 21:00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면허)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붙임 5】** 참조

분야 \ 비율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Ⅵ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부산광역시와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험감독관 지시 불응·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의 정지 · 무효 및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필기·체력·서류전형·신체검사·면접)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단계별로 **별도 안내되는 시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등)를 **절대 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답안을 표기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기재된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유의사항

○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장갑 착용·개인소지용 파우더 사용은 일체 불허**하며(파우더 제공) 징 또는 스터드가 있는 신발(스파이크 등)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체력시험 전후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 등이나 체력시험 중 무단이석 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자**의 경우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및 평가점수

3-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3-2.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5.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비율

6.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7. 계급환산기준표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방식 등 연소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유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기초 등 화재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원리(방법) - 소화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비고 〉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붙임 3-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3-2】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붙임 참고)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부산광역시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응시자 도핑테스트 검사 동의서
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연 락 처 :

2017년 월 일

위 본인은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Ⅰ.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 chlorothiazide
-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 dextromoramide
-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 hydromorphone
- ▸ methadone
- ▸ oxycodone
- ▸ oxymorphone
- ▸ pentazocine
- ▸ pethidine
- ▸ morphine

Ⅱ.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 료 목 적 사 용　면 책 신 청 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_____	2. 성　　별 : 여 ☐　남 ☐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 드 폰 :_____	6. 이 메 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

_____

_____

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_____

_____

_____

※**진단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5】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비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5%</th><th colspan="2">3%</th><th colspan="2">1%</th></tr>
<tr><td rowspan="5">①
자격증
(면허증)</td><td rowspan="5">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td><td rowspan="5">《기술사》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철도차량,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화공,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기상예보,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

《기능장》 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정비,자동차정비,위험물,전기,전자기기,통신설비,가스,에너지관리</td><td rowspan="5">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td><td rowspan="5">《기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분야),소방설비(전기분야),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기상,기상감정,원자력,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td><td rowspan="5">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td><td rowspan="5">《산업기사》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방수,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농업기계,생산자동화,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약류제조,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분야),소방설비(전기분야),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거푸집,건축도장,건축목공,도배,미장,방수,비계,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농기계정비,생산자동화,반도체장비유지보수,철도차량정비,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화학분석,위험물,전기,철도전기신호,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기기,통신선로,가스,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td></tr>
<tr><td>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td><td>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td><td>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td></tr>
<tr><td>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td><td>응급구조사(1급),
간호사</td><td>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td></tr>
<tr><td>의사, 변호사</td><td>소방안전교육사</td><td>응급구조사(2급)</td></tr>
<tr><td>소방시설관리사</td><td></td><td></td></tr>
<tr><td>②
사무관리</td><td></td><td>컴퓨터활용능력 1급</td><td>컴퓨터활용능력 2급</td></tr>
</table>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중직무분야」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붙임 6】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 과 (전공)		졸 업 일 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7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전화)	성 명	(인)

2017. . .

○○○○**학과장**	**날인**

○ ○ 대 학(교) 총장 (직인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7】

계 급 환 산 기 준 표

구분 / 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등 학교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소방령 지방 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소방경 지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 (3년이상)
소방위 지방 소방위	6급	경위	중위 소위 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소방장 지방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소방사 지방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 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 채용등 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 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